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무선통신망 성능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감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거리 공중감시 능력 강화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31. ~ 2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제4조의2제2항제3호”를 “제4조의2제2항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718”을 “7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718”을 “72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651”을 “65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방위사업청 소속기관 공무원(군인제외) 정원표(제2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18</u>	<u>721</u>	+3
일반직 계	<u>718</u>	<u>721</u>	+3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651</u>	<u>654</u>	+3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6